

의안 번호	1362	【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5. 31.(수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6. 1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6. 9.(금)

2. 제안이유

위임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미적용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별표 1)
- 나.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·과명 변경(안 별표 2)
 - 세무과를 세무2과로 변경

4. 근거법규

- 가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의2, 제8조, 제9조, 제9조의5, 제19조
- 나.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, 제11조
- 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라.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및 제9조
- 마.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 제8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하는 사무의 상위법령 등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